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9. 7.(수) 10:00 2022. 9. 7.(수) 석간	배포 일시	2022. 9. 7.(수) 10:00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 김지원 (044-202-7190)
		담당자	사무관 김정탁 (044-202-7193)

한국형 실업부조, 현장의 의견을 담아 내실있게 운영한다

■ **일정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대신 감액지급 등 「구직자취업촉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**

정부는 **9월 7일(수) 국무회의**에서 **「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구직자취업촉진법"」 일부개정법률안**을 심의·의결하고, 9월 내로 법률안을 **국회에 제출**할 예정이다.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**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**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, **현장의견 등을 토대로** '21년 제도 시행 후 그간의 **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**하고자 추진되었다.

* 국회 의결시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

대표적으로 현재 **월 54.9만원*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**하고 있으나,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한 **취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**시키는 문제가 있었다.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**지급정지하는 방식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**하는 **방식으로 개선**하여, 참여자들이 **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활동이 가능**하게 되어 향후 **취업에 긍정적인 영향**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* '22년 시간단위 최저임금 9,160원 x 60시간 = 549,600원

☑ 현장의 의견

ㅇ 취업을 위한 수업 수강료가 60만원으로 구직촉진수당만으로는 수강할 수가 없었습니다.

ㅇ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60만원 가량을 수령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 54만원을 번 사람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, 55만원을 번 사람은 5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

또한 **청소년부모 등 15~17세 구직자**가 구직활동시 안정적으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**소득요건 특례*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**를 **18~34세 이하**에서 **15~34세 이하로 확대**하는 내용의 **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**이다.

* 현재 ▲(18~34세) 중위소득 120% 이하, ▲(그 이외) 중위소득 60% 이하

이 밖에 현재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(통상 1년, 추가 6개월 연장가능) 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(3년→1~2년)하고 있으나 **사후관리 기간*에 취업**한 자도 **재참여 제한 기간**을 **동일하게 단축**하며, 부정수급·오지급에 대한 **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**해야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**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에 충당**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
*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최대 4개월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가능(법 제15조)

한편,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'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**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도 47만명 취업취약계층(Ⅰ유형 40만명 포함)**에 대한 **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더욱 강화**할 예정이다.

내년에는 **구직촉진수당**을 **고령부모·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**('22년 50만원 → '23년 최대 90만원)하여, **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조기취업성공수당**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**3개월 이내 취업시 50~125만원**(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)으로 확대*하여, **참여자들이 더 일찍 취업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인센티브를 강화**할 예정이다.

* ('22년)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과 관계없이 50만원 지원
('23년)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원

구직자가 취업 전 **직무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향상**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**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**도 **1.7만명** 규모로 편성하여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 참여기업이 **일경험 외** 직무교육, 개인·단체 과제

수행, 현장견학 등 **다양한 세부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**하여 **참여자의 직무역량을 향상**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해 **기업의 참여요건을 상향**(5인→10인 이상 기업)하고, **인건비 대신 과정운영비를 지원***토록 개편할 계획이다.

* <'22년 인턴형> ▲(기업) 1인당 인건비 월 192만원,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, ▲(참여자) 임금
<'23년> ▲(기업) 1인당 과정운영비 월 50만원, ▲(참여자) 참여수당 월 140만원 지원

☑ **〈운영사례: LG전자〉**

ㅇ 12주(444시간) 과정으로 운영
ㅇ 서비스센터 현장실습 344시간 이외 평택러닝센터 및 ISC 이노베이션갤러리 방문, 개별·조별 과제 수행(고객관점 LG서비스 제안사항 발굴) 등 100시간 별도 운영

아울러 고용노동부는 **9월** 전국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**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**한다. **9월 14일부터 10월 21일**까지 **취업상담 커피트럭**이 전국 **24개 대학**, 채용박람회, 여성일자리박람회 및 주요 마트, 공원, 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**14,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함께 커피차 응원***을 진행한다. 또한 **9월 16일부터 10월 31일**까지 **친구추천 챌린지**를 진행하여 취업 준비 중인 많은 국민에게 **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**할 예정이다.

* 취업상담 커피트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경우 상품권 등 증정

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"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**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**하여 제도 **개선과제를 지속 발굴**할 계획이다"라며, "**국민취업지원제도**는 실업부조와 함께 **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**로서 **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**과 **안정적인 생계지원**이라는 **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**토록 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| **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('22년)**

고용노동부

한국형 실업부조

국민취업 지원제도

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!



■ 취업지원서비스

취업상담	직업심리검사 / 구직방향 설정
직업능력 향상지원	직업훈련, 일경험(인턴, 직장체험),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
취업알선	이력서·면접 클리닉 / 동행면접

*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
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

**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 지급
(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시)

■ 생계지원

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

· **최대 300만원**(월 50만원*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급

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

· 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 지급
· 훈련참여수당 (직업훈련 참여 시 **월 최대 28.4만원** 최대 6개월) 지급

■ 참여조건

Ⅰ유형

· 15~69세 : 중위소득 60%이하 + 재산 4억원 이하
· 18~34세 : 중위소득 120%이하 + 재산 5억원 이하

Ⅱ유형

· 특정계층 : 소득무관
· 18~34세 : 소득무관 + (공통) 재산 무관
· 35~69세 : 중위소득 100% 이하

■ 신청접수

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

Ch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

문의 고용센터 (국번없이) 1350

https://www.kua.go.kr

붙임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벤트 안내 포스터



